

우리나라 유방암검진의 건강보험급여

신 성 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장

1. 유방암 검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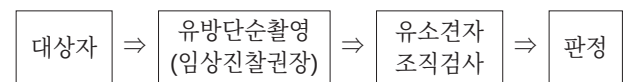
- 1963년 3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 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정암검진 실시
 - 대상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1993년 대상확대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부양자
- 1996년 대상확대 : 직장피보험자
- 1999년 대상확대 : 지역세대주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실시
 - 대상 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001년 대상확대 :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 2002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확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하위 20%(위암, 유방암)
- 2003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확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하위 30%(간암 추가)
- 2004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확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하위 50%(대장암 추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방암검진 프로그램

가. 유방암검진 실시대상·주기, 비용부담

- 실시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
- 실시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2년
- 비용부담 : 공단 50%, 수검자 50%
-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은 수검자 부담금(50%)을 국가에서 부담

나. 검사절차



※ 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검토하였으나, 초음파검사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유로 포함되지 못함.

다. 초음파검사의 급여대상 적용시기 검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2001.12.31. 개정)
 - 5.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
 - 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 (1) 초음파영상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2003.12.31. 개정)
 - 5. 한시적 비급여 대상
 - 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 (1) 초음파영상.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검사수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중임(건강보험공단 및 병원협회에서 각각 발주)

라. 검사방법

-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하고 의사의 유방 임상진찰을 병행하도록 권장
- 유방촬영은 좌우 각 2회(정면, 측면)씩 촬영
- 유방단순촬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
- 유방촬영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조직검사 실시

○병리조직검사는 병리와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

마. 보고체계

○촉진 및 유방단순촬영

- 병형 : 정상, 양성, 유방암 의심, 유방암, 추가검사 요함
- 부위 : 응어리가 발견된 부위의 해당내용을 기재
- 1. 좌상외 2. 좌상내 3. 좌하외 4. 좌하내 5. 좌유륜 6. 좌12시 7. 좌3시 8. 좌6시 9. 좌9시 10. 우상외 11. 우상내 12. 우하외 13. 우하내 14. 우유륜 15. 우12시 16. 우3시 17. 우6시 18. 우9시 19. 기타(1 ~ 18항 이외의 해부학적 부위를 기재)

○조직검사

1. 양성병변 2. 비정상세포 발견 3. 유방암 의심 4. 유방암 5. 기타

※ 기타는 1 - 4항 이외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소견을 기재

3. 유방암 검진기관 운영

가. 검진기관의 요건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 실시

○유방암검진은 건강검진운영세칙에서 정한 유방촬영기기를 추가로 구비하면 가능

<암검진기관 지정현황>

(05.8.31.현재, 단위 : 개소, %)

구 분	검진기관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기관수	2,178	1,126	1,482	1,131	1,666	1,181

<요양기관 종별 유방암 검진기관 현황>

(05. 8. 31.현재,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기관수	1,126	263	383	474	6
비율	100.0	23.4	34.0	42.1	0.5

<유방암 검진기관 지정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관수	-	741	893	1,098	1,126

<지역별 유방암검진기관 현황>

(2004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검진기관 수 (A)	연간 대상인원 (B)	대상인원대비 검진기관 (B/A)	구 분	검진기관 수 (A)	연간대상인원 (B)	대상인원대비 검진기관 (B/A)
서울시	194	1,228,444	6,332	강원도	38	189,743	4,993
부산시	93	449,321	4,831	충 북	25	181,323	7,252
대구시	64	259,099	4,048	충 남	47	245,994	5,233
인천시	47	284,416	6,051	전 북	43	233,449	5,429
광주시	43	155,006	3,604	전 남	64	253,923	3,967
대전시	42	165,543	3,941	경 북	57	343,527	6,026
울산시	27	114,454	4,239	경 남	87	374,040	4,299
경기도	217	1,123,049	5,175	제주도	10	66,758	6,675
합계	1,098	5,668,089	5,162				

-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 유방촬영기기를 2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함.

나. 유방암 검진기관 현황

- 검진기관은 총 2,178개 기관이며, 이 중 유방암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은 1,126개 기관으로 검진기관의 51.7%에 불과함.
- 유방암 검진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474개소(42%), 병원이 383개소(34%), 종합병원이 263개소(23%) 임.
- 유방암 검진기관은 2002년에 741개소에서 2005년에는 385개소가 늘어난 1,126개 기관임.
- 지역별 검진기관 수를 보면, 경기도가 217개로 가장 많으나, 유방암검진 대상인원 대비 검진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시로 검진기관 1개소 당 대상인원이 3,604명으로 나타남.

4. 공단의 유방암 검진결과

가. 수검현황(2004)

- 4대암에 대한 수검인원은 1,358천명으로 15%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방암의 경우에는 대상자 5,704천명 중 683천명이 수검하여 12%의 수검률을 나타냄.
- 유방암의 연도별 수검인원을 보면, 2001년에 73,96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9배 이상 늘어난 683,371명이 수검함.

나. 유방암 판정현황(2004)

- 유방암 검진의 암발견율은 0.02%에 불과하나 암의 심자 10.63%를 감안하면 다른 검진의 암발견율과

<암검진 수검률>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대상자	9,056	5,704	9,018	4,897	552
수검자	1,358	683	1,158	402	73
수검률	15.0	12.0	12.8	8.2	13.2

※ 우리나라 유방암검진 수검률(2004년) : 42.5% … 국립암센터 자료

<유방암 수검인원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수검인원	73,966	404,783	599,840	683,371

<유방암 판정결과>

(단위 : 명, %)					
구 분	계	정상	암의심	암치료대상	기타질환
수검인원	683,371	478,187	72,661	129	132,394
비율	100.00	69.97	10.63	0.02	19.37

※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의 암 발견율 : 0.21%

<연령별 판정결과>

(단위 : 명, %)						
구 분	수검자		암 의심		암 치료대상	
40대	286,712	100.00	42,818	14.93	62	0.022
50대	225,764	100.00	20,925	9.27	29	0.013
60세 이상	170,895	100.00	8,918	5.22	38	0.022

<유방암 검진수가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지급비용	40,300	40,220	51,820	53,420	55,290

<암검사비용 지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지급비용	3,242	15,393	25,406	32,078

유사할 것으로 생각됨.

- 연령별 판정결과를 보면, 암치료대상은 50대에서 0.013%로 가장 낮으나 암의심자는 연령이 높을 수록 낮아짐.

5. 유방암의 검진수가

가. 현행 검진수가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가 - 1(AA254) × 60% … 4,610원
의과 의원의 재진 진찰료 7,680원
- 유방단순촬영(양측)
- 촬영 및 판독료 : 다 - 127(G2701) × 1.5 × 2
… 17,430원
5,810원
동일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2매 이상의 방사선영상 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2매부터 매당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
- 필름료(18" × 10" 4매) : 치료재료 금액표 … 1,840원
- 조직검사
- 미세침 생검 : 나 - 850(C8506) … 12,830원
- 병리조직검사 : 나 - 550(C5501) … 18,580원
- 총 비용 : 55,290원
- 유방암의 수가는 2001년이후 꾸준히 증가함.
- 공단에서 지급한 암검진비용은 2001년에 3,242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001년 보다 약 10

배 증가한 32,078백만원 지급됨.

나. 검진수가 산정

- 근거
-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 검진수가의 산정원칙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검진수가를 산정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 상담료는 종전 수준(4,160원)으로 산정 : 요양급여행위 중 재진진찰료 7,680원의 60%인 4,610원으로 산정

6. 개선 과제

- 유방암을 포함한 암검진의 수검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암검진기관 확대 필요
- (' 01) 17만명 → (' 02) 79만명 → (' 03) 111만명 → (' 04) 136만명
-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적정수가 보장 필요
- 상담료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등
- 유암 검진프로그램에 “ 조직검사 ”를 제외하거나, “ 초음파검사 ” 추가하는 방안 검토